

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66,600천원	[국비]33,300천원	[사비]33,3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평생교육국	청소년정책과	고석영 2133-4110	문은지 2133-4127	노경희 2133-4130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1예산액 (A)	2022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13,050) 26,100	(x33,300) 66,600	(x20,250) 40,500	(x155) 155
사회보장적수혜금	(x13,050) 26,100	(x33,300) 66,600	(x20,250) 40,500	(x155) 155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	
사회보장적수혜금	○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22(연인원)*300,000	=	66,600천원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원가정의 보호·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인 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과 동일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

사업근거
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)
- 서울특별시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2.1.~2022.12.
- 지원대상 :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퇴소일기준,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고 직전 1년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.
- 사업수행주체 : 자치구
- 추진방법 : 최종쉼터가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, 서울시 예산 지급
- 사업의 주요내용 : 대상자에게 매월 30만원 씩 3년간 지급

추진경위

- '20. 6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- '20. 7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(TF) 운영
-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방지 후속 대책 논의
- '20. 7월 범정부 특별팀 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종합대책 중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마련
- 원가정의 보호·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인 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과 동일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

2022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66,600	
지원계획 수립	2022.01~2022.02	0	연간 지원계획 수립

보조금 신청 및 재배정	2022.01~2022.12	66,600	매월 자치구 소요예산 조사 후 재배정
보조금 집행 정산	2023.01~2023.02	0	보조금 집행 내역 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

4 사 업 효 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9년도	
2020년도	
2021년도	○ 21년 신규사업 - 예산 26,100천원 / 집행7,200천원('21.10.15.기준)

향후 기대효과

-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